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군인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에 포함되나, 5년 미만 단기복무 전역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훈련 대상에 5년 미만 단기복무 전역예정자를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5년 미만 단기복무 전역예정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도록 시행령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5년 미만의 기간동안 현역으로 복무 후 전역예정인 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⑥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0조의2(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① ~ ③ (생략)	제60조의2(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5년 미만의 기간동안 현역으로 복무 후 전역예정인 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신설>	⑤ 제4항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 ⑥ (생략)	⑥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6627